

# 警察公務員의 勤務行態와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朴 範 來\*\*

目	次
第 I 章 序 論	第 4 節 警察官의 對民意識
第 II 章 警察公務員의 勤務行態와 意識構造	第 III 章 調査結果에 대한 評價
第 1 節 調査의 對象과 方法	第 IV 章 結 論
第 2 節 警察公務員의 生態 分析	第 1 節 理論的 結論
第 3 節 警察官의 價値意識	第 2 節 政策建議
	參考文獻

## 第 I 章 序 論

警察의 任務에 대하여 윌슨(O.W. Wilson)은 “犯罪의 공격에 대하여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고 公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sup>1)</sup> 설리반(John L.

\* 本 論文은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碩士學位論文(1984.8)을 要約한 것임.

\*\* 警察大學 敎官.

1) O.W. Wilson and Roy C. McLaren,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7), p.7.

Sullivan)은 “警察의 기본적인 職務와 責任은 生命·財産의 保護, 公安의 維持, 犯罪의 豫防, 法の 執行, 違反者의 逮捕와 遺失物·盜難品の 回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sup>2)</sup> 이는 모두 警察의 임무를 일반 公安維持에 국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基本的 任務外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警察의 임무로 부가된 것은 많다. 즉 交通의 발달로 복잡한 交通의 整理가 중요한 임무로 되었고, 풍속을 저해하는 事犯에 대한 단속업무도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또한 市民의 법령준수 및 社會道德의 보존을 위한 指導, 불행한 犯罪人의 구호, 개인 및 사회복지를 위한 奉仕등 많은 것들이 경찰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警察이 權力의 행사를 本體로 하기 때문에 執行力이 확실·신속하고, 그 組織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時間적으로 24時間 계속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行政活動에 警察力을 이용하려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중요하고 복잡·다양한 警察業務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는 잘 정비된 組織과 훌륭한 制度 그리고 警察公務員의 能力과 왕성한 勤務意慾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行政의 과정은 일차적으로 行政目標의 성립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는 이에 일치하는 政策 및 企劃의 수립이 뒤따르게 되며, 政策 및 企劃을 실천에 옮기는데 요청되는 分業體制로서의 組織化作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組織이 計劃대로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위로 부터의 指示命令이 있는 경우에만 수동적·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行政成果를 提高하고 나아가 변화하는 行政需要에 對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적극적인 움직임을 “動作化(motivating)” 또는 “勤務意慾”이라고 하며, 행정의 성과는 조직 구성원의 能力과 勤務意慾에 左右된다.<sup>3)</sup> 왜냐하면 아무리 有能한 人才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組織의 가치적인 존재가 되게하기 위하여는 그의 能力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能力發揮

2) John L. Sullivan,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3r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7), p.165

3) 朴東緒, 「韓國行政論」(서울: 博英社, 1978), 374面.

를 위한 동기유발이나 사기양양의 대책이 뒤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sup>4)</sup>

그러나 오늘날 韓國警察은 人力이나 豫算, 勤務環境 또는 業務量 등 모든 面에서 바람직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나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보호등에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警察公務員의 勤務行態와 意識構造를 실증조사와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분석·규명하고 앞으로 警察制度의 개선방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第Ⅱ章 警察公務員의 勤務行態와 意識構造

### 第Ⅰ節 調査의 對象과 方法

調査의 목적에 비추어 調査對象을 ① 大都市地域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② 中都市地域으로 경기도 수원경찰서, ③ 農村地域으로서 경기도 용인경찰서등 광역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3개경찰서를 선정 조사하였다.

〈表1〉 표본지역 경찰관의 정원 현황

1983.8.20 현재

階級 對象署	計	總 警	警 正	警 監	警 衛	警 査	警 長	巡 警
計	880	3	12	12	49	86	215	503
永 登 浦	420	1	6	7	22	34	126	224
水 原	311	1	6		25	31	60	188
龍 仁	149	1		5	2	21	29	91

4) 崔鍾泰, 「現代人事管理論」(서울:博英社, 1981), 482面.

調査要領은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피조사자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하여 신뢰도를 높였으며, 배부중 평균 회수율은 96%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 第2節 警察公務員의 生態分析

警察은 職務의 性格上 上命下服의 階級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階級별 定員의 配分은 업무의 量과 質 그리고 機構의 편제에 따라 策定되어야 하는데 한국경찰의 階級별 구성현황을 보면 간부가 8.0%, 비간부가 92.0%로 정각이 예리하고 저변이 중후한 형태로 되어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警察公務員의 연령은 30대가 42%로 가장 많고,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8%로서 이들이 한국경찰의 핵심인력으로 나타나 있다. 40대 이전이 58%이고, 40대이후가 42%로 젊음과 노련함이 적당히 배합되어 있다고 본다.

〈表2〉 연령별 분포현황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이상	무응답	계
인원(명)	135	352	303	49	2	841
비율(%)	16.1	41.9	36.0	5.8	0.2	100.0

또한 勤務年數를 보면 5년미만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 25.2%, 5년이상 10년미만이 24.4%, 10년이상 15년미만이 23.2%이며 20년이상 근속자가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초 임용방법은 신규채용 순경이 91.3%, 간부후보생 및 특별채용이 4.6%, 기타가 4%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찰관이 비간부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第3節 警察官의 價値意識

#### 1. 一般的 態도와 性向

##### 가. 扶養家族數

警察官의 扶養가족은 3~4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52.3%로 가장 많고, 1~2명이 22.6%, 5명이상이 18.8%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경찰관이 5.6

%인데 이들은 거의 모두가 순경에 해당되고 있다.

〈表 3〉 부양가족 현황

	없 다	1 ~ 2명	3 ~ 4명	5명 이상	무응답	계
인 원 (명)	47	190	440	158	6	841
비 율 (%)	5.6	22.6	52.3	18.8	0.7	100.0

나. 住宅現況

警察官들의 居住關係를 보면 自宅에서 기거하는 자가 52.4%로 과반수 이상이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 이는 자기집의 소유자와 부모의 집에서 기거하는 두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으며, 전세 생활자는 34.5%, 월세 생활자는 9.9%로 45%이상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 주고 있다.

〈表 4〉 警察官들의 居住現況

	자 택	전 세	월 세	사 택	기 타	무응답	계
인 원 (명)	441	290	83	6	18	3	841
비 율 (%)	52.4	34.4	9.9	0.7	2.1	0.4	100.0

다. 봉급생활의 충족현황

일반적으로 행정체계내에는 組織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장치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는 유인제도를 들 수가 있다. 유인은 한 조직이 직원의 협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상이며, 가장 분명한 유인은 봉급을 주기적으로 증가시켜 마음을 끄는 것이다.<sup>5)</sup>

그러나 현재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公務員의 보수는 동결되고 있어서 유인제도를 통한 公務員의 활성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재의 봉급으로 생활하기가 어떠한가를 조사한 바, 11.1%의 경찰관이 아주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부족하다는 자가 62.2%, 보통이라는 자가 25.1%이며, 충분하다는 경찰관은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73.3%의 경찰관이 현재의 봉급으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Ira sharkansky, 「行政學-政府機關의 政策形成-」 劉鍾海譯 (서울: 博英社, 1975), 194面.

<表 5> 봉급생활의 충족현황

	아주부족	부 족	보 통	충 분	아주충분	무응답	계
인 원 (명)	93	523	211	9		5	841
비 율 (%)	11.1	62.2	25.1	1.1		0.6	100.0

따라서 경찰관들은 현행봉급보다 일정액의 추가수입을 희망하고 있는 바, 그 정도를 보면 5만원미만이 16.6%, 5만원이상 10만원미만이 50.3%, 10만원이상 이 31.4%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들 경찰관들이 추가수입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의 경찰관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봉급의 부족을 느끼고 추가수입을 희망하고 있는 바, 이는 경찰관의 사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奉仕警察로서의 임무수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고 본다.

<表 6> 부족한 생활비 추가요망 정도

	5만원미만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무응답	계
인 원 (명)	140	423	226	38	14	841
비 율 (%)	16.6	50.3	26.9	4.5	1.7	100.0

<表 7> 추가수입을 희망하는 이유

	기본적 생계유지	의료비	자녀등 교육	자신의 공부	주택등 마련	노후대비 저축	무응답	계
인원(명)	370	18	188	10	154	87	14	841
비율(%)	44.0	2.1	22.4	1.2	18.3	10.3	1.7	100.0

라. 家庭生活과 警察生活의 調和

가정생활의 안정과 직장생활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가정이 안정되지 못한 警察官은 직장에서 충실하게 근무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본다. 경찰관은 일반공무원이나 민간기업체의 근무자에 비하여 가정에 충실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많다. 이에 대한 조사를 보더라도 38.8%의 경찰관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의 영위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는 공직자로서의 忠誠과 가정생활간에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表 8〉 가정생활과 경찰생활의 조화

	전혀 조화안됨	조화 되는 안편	보 통	조화되는 편	조 화 됨	무응답	계
인 원 (명)	70	231	271	220	46	3	841
비 율 (%)	8.3	27.5	32.2	26.2	5.5	0.3	100.0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51.3%의 경찰관들이 앞으로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表 9〉 장래 경찰관의 살림전망

	나아진다	못해진다	그저 그렇다	예측할 수 없다	무응답	계
인 명 (명)	431	34	248	124	4	841
비 율 (%)	51.3	4.0	29.5	14.7	0.5	100.0

## 2. 警察官의 公職觀

### 가. 警察職의 選擇動機

경찰관들이 경찰직을 택하게 된 동기를 보면, 하나의 직업을 얻기 위하여 택하였다는 자가 59.0%로 가장 많고 公益에 奉仕하기 위하여 택한 직원이 21.7%, 단순히 주위의 권유에 의하여 택한 자가 3.1%, 기타의 사유가 10.5%이다.

〈表 10〉 警察職을 택하게 된 動機

	공익에 봉사	직업 얻기 위함	주위의 권유	기 타	무응답	계
인 원 (명)	228	496	26	88	3	841
비 율 (%)	27.1	59.0	3.1	10.5	0.4	100.0

이는 警察官이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警察職을 택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수체계 확립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가

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술한 동기를 가지고 경찰에 투신한 이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 대단히 만족한다는 자는 6.1%에 불과하나 그래도 79.4%의 대다수 경찰관이 경찰직에 대하여 그런대로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11〉 경찰직에 대한 만족도

	대단히 만족	비교적 만족	보 통	비교적 불만	대단히 불만	무응답	계
인 원(명)	51	167	449	158	14	2	841
비 율(%)	6.1	19.9	53.4	18.8	1.7	0.2	100.0

그리고 경찰직을 만족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公益에 奉仕하기 때문이라는 자가 27.5%이고, 正義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자가 17.6%, 적성에 맞기 때문이라는 자가 15.3%, 자기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자가 14.5%이며, 權力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경찰관은 0.6%뿐으로 대부분의 경찰관이 그 만족이유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表 12〉 경찰직을 만족하는 이유

	공익에 사	정의실현	적성부합	의지실현	권력 행사	기 타	무응답	계
인 원(명)	231	148	129	122	5	137	69	841
비 율(%)	27.5	17.6	15.3	14.5	0.6	16.3	8.2	100.0

나. 警察官의 業務量

警察官들이 취급하는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 58.2%의 경찰관이 취급하는 업무가 많아서 피곤하다고 하며, 0.3%는 아주 많아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아주 한가하거나 조금 한가하다는 경찰관은 3.7%에 불과하며 적당하다는 경찰관은 34.0%이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경찰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13〉 경찰관의 업무량 정도

	아주 한가함	조금 한가함	적당함	많아서 피곤	감당할수 없다	무응답	계
인원(명)	7	24	286	489	28	7	841
비율(%)	0.8	2.9	34.0	58.2	3.3	0.8	100.0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 경찰관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료들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했을 때 동료의 태도를 조사한 바, 바쁘지 않는 한 도와 준다고 생각하는 자가 61.6%이고, 마지못해 도와준다는 자가 17.2%, 불친절하고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자가 12.8%이며, 모든 일을 제쳐놓고 도와준다는 자는 2.7%에 불과하다.

〈表 14〉 업무협조 요청시 동료의 태도

	불친절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마지못해 도와준다	한가하면 도와준다	잘 도와준다	자신의일을 제쳐놓고 도와준다	무응답	계
인원(명)	44	145	518	108	23	3	841
비율(%)	5.2	17.2	61.6	12.8	2.7	0.4	100.0

여기에서 경찰관의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는 수가 58% 정도인 바, 바쁘지 않는 한 도와준다는 61.6%도 항상 바쁘다고 본다면 동료 상호간의 도움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職場에서 認定받는 정도

일반적으로 아무리 말단에서 보잘 것 없는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의 가치인정과 존재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또 타인보다 우수한 업적을 낸 경우에는 칭찬을 받고 싶어한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자는 職場生活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근무에 임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짜증이 나며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이다.

적은 보수와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

을 받고 있는가를 조사한 바,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24%, 종종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20.7%로 44.7%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정을 받지 못 하거나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은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보통 직장에서 그런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며 이는 警察職務의 수행과 관련하여 볼 때 바람직한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表 15〉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도

	항상 인정받음	종종 인정받음	보통	못 받는편	전혀 인정받음	무응답	계
인원(명)	202	174	437	17	6	5	841
비율(%)	24.0	20.7	52.0	2.0	0.7	0.6	100.0

공무원의 보직을 결정할 때에는 배치의 목적, 직무의 성격, 공무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sup>6)</sup> 이러한 사항을 무시하고 경찰공무원의 補職을 결정하면 그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리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전술한 바와 같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정도와 관련, 이들 경찰관들이 자기의 업무집행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42.1%이고, 조금 발휘하고 있다는 경찰관이 42.6%, 그리고 능력이상으로 발휘하고 있다는 경찰관이 3%로서 87.7%의 경찰관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능력발휘가 안되거나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경찰관이 11.2%이다.

공무원의 보직결정과 그들의 능력발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 11.2%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보직의 적정여부가 문제시 된다고 볼 수 있다.

6) 朴璉鎬, 「行政學 新論」(서울: 博英社, 1981), 462面.

〈表 16〉 경찰관의 능력 발휘 정도

	전혀 발휘 발휘 않됨	발휘 않되는편	조금 발휘 됨	충분히 발휘 됨	능력이상 발휘 됨	무응답	계
인 명 (명)	12	82	358	354	27	8	841
비 율 (%)	1.4	9.8	42.6	42.1	3.2	0.9	100.0

라. 희망 사항

현재 경찰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면 승진을 원하는 경찰관이 44.6%를 차지하고 있는 바, 승진은 人事行政上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에게는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채용의 경우보다 공무원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sup>7)</sup>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이 적정한 보수로서 34.2%에 해당되며 이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에 대한 욕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적정한 업무량이 9.0%, 신분보장이 8.2% 등이다.

〈表 17〉 귀하가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승진	전출	적정보수	적정업무량	신분보장	무응답	계
인 원 (명)	375	24	288	76	69	9	841
비 율 (%)	44.6	2.9	34.2	9.0	8.2	1.1	100.0

이와같이 현재 경찰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승진이라고 보는데, 이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능성)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더니, 27.5%의 경찰관이 단념하거나 거의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승진의 기회가 비교적 많거나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은 18.6%에 불과하며, 53%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7) 申宗淳, 「行政學 概論」(서울: 博英社, 1982), 351面.

〈表 18〉 승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견해

	단념한다	거 의 포기한다	약 간 희망있다	비 교 적 다	아주 많다	무 응 답	계
인 원 (명)	90	141	445	113	44	8	841
비 율 (%)	10.7	16.8	52.9	13.4	5.2	1.0	100.0

이와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경찰직은 장래에 극히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찰관은 8.9%이고, 비교적 바람직하리라는 경찰관은 48.6%이며, 약간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경찰관이 30.4%, 대단히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경찰관이 11.7%이다. 따라서 57.5%의 경찰관은 장래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42.2%는 앞으로 인기없는 직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表 19〉 경찰직의 전망

	극히 바람직하다	비교적 바람직하다	약간 인기없다	대단히 인기없다	무 응 답	계
인 원 (명)	75	409	256	98	3	841
비 율 (%)	8.9	48.6	30.4	11.7	0.4	100.0

경찰직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전망을 하고 있는 이들 경찰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경찰직을 권하겠는가를 알아 보았더니 73.2%가 권할 수 없다거나 절대로 권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권하겠다는 경찰관은 불과 1.2% 뿐이다. 따라서 경찰관 자신은 경찰직을 그렇게 매력있는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表 20〉 자녀에게 경찰직을 권할 수 있는가?

	절대 권하지 않겠다	권할수없다	잘모르겠다	권할수있다	적극 권하겠다	무 응 답	계
인 원 (명)	294	321	87	124	10	5	841
비 율 (%)	35.0	38.2	10.3	14.7	1.2	0.6	100.0

조직체란 행동하는 인간의 집단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 우수한 行政을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유능한 사람들이 그 조직체에 들어가야 하는데, 8) 경찰직이 매력에 없다는 것은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경찰직에 대하여 매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 경찰관들이 警察職外의 어떤 직업에 호감을 갖고 있는가를 보면, 기업가가 좋다는 경찰관이 28.4%이고, 판·검사에 매력을 느끼는 경찰관이 15%이며, 상업이 11.5%, 의사나 교수가 각각 10%, 그리고 경찰직외 다른 공무원을 좋게 보는 경찰관도 8.3%나 되고 있는 바,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表 21> 호감이 가는 직업

	군인	기업가	판·검사	회사원	교수	의사	상인	농업	공무원	무응답	계
인명(명)	55	239	126	33	84	85	97	44	70	8	841
비율(%)	6.5	28.4	15.0	3.9	10.0	10.1	11.5	5.2	8.3	1.0	100.0

마. 바람직한 警察官의 要件

경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경찰관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보면, 건전하고 균형있는 판단력과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경찰관이 42.9%로 가장 많고, 신체 건강하고 근면·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는 경찰관은 28.9%이며,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경찰관이 20.9%, 그리고 사회현상에 관한 이해가 넓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경찰관이 6.5%이다.

이는 警察職의 성격상 어떤 지식보다도 상황의 판단력과 지도력이 중요시 되고, 건강과 성실함이 중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表 22> 바람직한 경찰관의 요건

	교양·지식인	건강·성실인	이해넓은사람	판단력, 지도력	무응답	계
인원(명)	176	243	55	361	6	841
비율(%)	20.9	28.9	6.5	42.9	0.7	100.0

그리고 경찰관들의 事故原因이 무엇인가에 대한 警察官 자신들의 견해를 보면, 生活苦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41.7%로 가장 많고, 精神姿勢 때문이라고 보는 경찰관이 30.1%, 警察官의 資質이라고 보는 경찰관이 24.5%이며, 감독 불충분이 사고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찰관은 불과 0.8% 뿐이다.

〈表 23〉 警察官의 事故原因

	경찰관의 자질	생활고	정신자세	감독불충분	무응답	계
인원 (명)	206	351	253	7	24	841
비율 (%)	24.5	41.7	30.1	0.8	2.9	100.0

이와같은 태도는 경찰직의 불충분한 생활여건 속에서 정신자세가 해이해 질 때 不條理의 여지가 많은 사회풍토에 부합하여 사고를 저지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마. 警察紀綱 確立方案

警察이라는 행정조직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려면 조직성원의 제1차 욕구인 생리적(의식주와 건강) 욕구가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집단이라는 행동체제구성 부분인 개체로서의 下位體系 間에 심리갈등과 욕구불만에서 이른바 防禦機制(defence-mechanism)의 과다 현상으로 인하여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sup>9)</sup>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호작용은 對民奉仕의 충실을 기대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자신의 생리적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활하다 보면 민중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부당한 처리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예로서 1982年도의 警察公務員의 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李文永, 「行政學」(서울: 一潮閣, 1980), 205面.

9) 李桂燮, “韓國警察官에 關한 行態學的 研究”(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6), 6面.

〈表 24〉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징계현황

	계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인원(명)	1,765	3	10	30	149	177	292	1,104
비율(%)	100	0.2	0.6	1.7	8.4	10.0	16.5	62.6

(資料: 總務處, 總務處年報, 1983)

〈表 25〉 경찰공무원의 근무기능별 징계현황

	계	경 무	보 안	교 통	경 비	수 사	정 보	지 파	기 타
인원(명)	1,765	62	90	101	64	427	96	786	139
비율(%)	100	3.5	5.1	5.7	3.6	24.2	5.4	44.5	7.9

(資料: 總務處, 總務處年報, 1983)

이와같이 경찰공무원은 상당수가 징계원인 행위를 범하고 있는 바, 이러한 비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紀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찰기강 확립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찰관의 견해를 조사하였더니, 경찰관에 대한 후생복지대책의 확립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58.5%를 차지하고, 다음이 교양교육의 강화를 들고 있으며, 실무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는 경찰이 12.6%이고, 감찰기능의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경찰관은 불과 2.3% 뿐이다.

〈表 26〉 경찰기강 확립 방안

	실무교육 강 화	교양교육 강 화	감찰강화	지도단속	후생대책	무 응 답	계
인원(명)	106	153	19	58	492	13	841
비율(%)	12.6	18.2	2.3	6.9	58.5	1.6	100.0

이는 他律에 의한 紀綱確立方案은 일시적이고 실효성이 적으며, 교육을 통한 의식구조의 변화와 생활여건의 개선을 통한 안정된 상태에서 自律的으로 이루어 질

때 비로서 기강이 확립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바. 上司를 不信하는 理由

보편적인 상황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상사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상황이나 어떤 현실에 부딪치게 될 때 부하는 상사를 불신하게 되는바, 경찰관의 경우 상사를 불신하게 되는 이유를 조사 하였더니, 상사의 솔선수범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경찰관이 34.6%로 가장 많고, 일방적인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기 때문이라는 경찰관이 29%, 그리고 부당한 人事處理 때문에 상사를 불신한다는 경찰관도 18.2%나 되며, 상사의 능력부족이 불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6.0%, 기타 부당한 사건청탁, 직무태만의 순서로 나타나 있다.

<表 27> 직원의 상산불신 이유

	능 부 력 족	사 건 청 탁	상 납 잔 존	부 당 인 사	직 무 태 만	솔 선 수 범 결 여	과 중 한 업 무 지 시	무 응 답	계
인 원 (명)	50	13	49	153	7	291	244	34	841
비 율 (%)	6.0	1.6	5.8	18.2	0.8	34.6	29.0	4.0	100.0

警察과 같은 강력한 계급조직에서 부하가 上司를 不信하게 되면 충분한 組織力이 발휘되기 힘들고, 부하는 상사의 면전에서만 복종하는 풍토가 팽배하기가 쉽다. 과거에 警察組織內에서 상급자가 솔선수범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던 풍토는 이제 깨끗이 사라져야 하며, 계급에 상응한 권한과 책임의 형평원리 아래 상사의 솔선수범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그리고 아직도 5.8%의 경찰이 금품의 상납행위가 잔존하기 때문에 상사를 불신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은 부당한 인사처리 이유와 관련할 때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 第 4 節 警察官의 對民意識

현재 한국 경찰은 민주경찰로서의 전통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民衆 역시 民主主義的 생활이 체질화 되지 못한데다가, 국민의 非友好的인 對 警察認識이 日本의 식민통치하에서 부터 계속 한국민의 의식구조속에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이 현실적으로 과연 친절하고 봉사적인가에 대하여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곤란하다고 보며 국민들도 경찰관이 모두 친절하다고 생각할런지는 의심스럽다고 본다. 이는 비록 경찰관들이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무여건이나 사기등 많은 요소에 의하여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表 30〉 警察官의 對民態度에 대한 警察官의 見解

	친절하고 봉사적이다	거칠고 거만하다	친절하려고 노력한다	친절봉사하려고 노력않는다	무응답	계
인원(명)	180	42	574	32	13	841
비율(%)	21.4	5.0	68.3	3.8	1.6	100.0

라. 市民의 對 警察認識에 대한 見解

일반시민들이 경찰관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경찰관 자신들의 見解를 보면 시민은 경찰관을 선량한 시민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찰관은 21.2%이며, 경찰관은 약한자에 강하고 강한자에 약하다고 시민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경찰관이 50.4%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을 공정한 法執行者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경찰관은 20.9%이고, 경찰관을 권위적인 人格의 소유자라고 시민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찰관도 5.8%나 된다.

〈表 31〉 市民의 對 警察認識에 대한 警察官의 態度

	선량한 시민의 보호자이다	약자에강하고 강자에약하다	공정한 법의 집행자이다	권위적인 인 격의 소유자	무응답	계
인원(명)	178	424	176	49	14	841
비율(%)	21.2	50.4	20.9	5.8	1.7	100.0

이를보면 警察官 스스로 國民의 對警察認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國民

을 바라보는 警察官의 態度가 국민과의 友好的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이 국민이 경찰을 좋지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이들 경찰관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국민이 경찰을 불신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여 보았더니, 경찰관들이 범집행 과정에 있어서 과잉단속을 하기 때문에 국민은 경찰을 불신하게 된다고 보는 경찰관이 36.3 %이고, 경찰관들의 불친절한 言動이 主要原因이라고 보는 경찰관은 32.1 %이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不公正하게 法을 집행하기 때문에 불신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11.7 %이며, 인권유린 때문이라는 경찰관이 8.8 %, 금품을 수수하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다고 보는 경찰관이 7.9 %이다.

〈表 32〉 국민이 경찰을 불신하는 이유에 대한 경찰관의 견해

	불친절한 언동	금품수수 행위	불공정한 법 집행	인권유린	과잉단속	무응답	계
인원(명)	270	66	98	74	305	28	841
비율(%)	32.1	7.9	11.7	8.8	36.3	3.3	100.0

이는 경찰관 스스로가 국민으로부터 不信받는 원인을 범집행 과정에 있어서 不合理的 절차에 있다고 보고 있는 바, 對民關係에 있어서 경찰관의 태도와 직무수행 절차에 아직도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마. 記者의 對警察 取材에 대한 態度

權力的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自由와 權利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記者의 對 警察活動 取材가 사용되고 있으며, 종종 犯罪搜查의 保安維持와 관련되어 물의가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記者의 對警察 取材活動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를 보면, 취재방법만 좋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39.7 %이고, 記者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기사만 취재하면 된다고 보는 경찰관이 32.8 %이며 記者의 적극적인 취재활동은 경찰의 수사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搜查官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되므로 반대한다는 경찰관이 20.8 %, 그리고 記者의 對警察 取材는

무조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이 2%이다.

〈表 31〉 기자의 경찰 취재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

	방법과 좋으면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없다	수사활동과 관련 반대한다	경찰의 공식적 기사 제공만 취재해야 한다	무응답	계
인원(명)	334	17	175	276	9	841
비율(%)	39.7	2.0	20.1	32.8	1.1	100.0

이들보면 과거 일부 기자의 좋지않은 방법에 의한 取材活動에 대한 거부반응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人權의 보호와 法の 公正한 집행을 자극하기 위한 取材活動은 방법만 좋다면 그렇게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많은 경찰관들의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個人이든 組織團體이든 간에 자신들의 비위나 부정이 사회적으로 공개되어 여론화되는 것은 싫어하게 마련이며, 높은 수준의 倫理性이 강조되는 경찰 조직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지 부정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보도될 때 국민의 對 警察 認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므로 더욱 꺼리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실정 때문에 과거에 일부 경찰관은 기자의 警察官署 出入을 좋지않게 인식하였었으며 일부 경찰지휘관들은 보도기사에 지나치게 과민하였던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경찰의 직무수행방법이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오히려 경찰은 경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언론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언론 또한 경찰의 民主化 發展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第 Ⅲ 章 調查結果에 대한 評價

1. 현재 경찰관들은 자기 집에서 기거하는 자가 반수를 약간 상회하며, 3~4명의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부족한 봉급으로 生活苦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10만원 정도의 생활비 부족을 주장하고 있으며, 생활비 부족액과

이의 충당방법을 관련시켜 볼 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부정의 야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부정은 올바른 法執行을 그르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對警察 評價를 나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경찰관들은 現職에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다가 退職後의 생활에도 不安感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퇴직후의 생활에 대한 不安感은 在職時의 行動과 態度에 많은 변수로 작용되리라고 본다.

3. 많은 業務量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은 가족과의 행복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相對的 여가 빈곤 현상으로 인한 피해의식은 경찰관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만을 쌓이게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원만하지 못한 가정생활속에서 경찰관들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4. 경찰관들은 대체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승진과 적정한 보수인데, 승진의 기회는 좁고 보수의 인상도 곤란하기 때문에 의욕적인 근무환경의 조성은 어렵게 되고, 나아가 진정한 奉仕 警察로서의 자세확립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5. 근무의욕이 결여되기 쉬운 이들 경찰관들은 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직업에 好感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轉職할 수 있다는 態度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 경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심스럽다고 본다.

6. 경찰관들의 事故 原因이 주로 生活苦로 인한 것임을 볼 때, 앞으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우리라 예상되며, 생활여건이 改善되지 않는 限 生活苦 때문에 야기되는 경찰관의 비위는 근절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7. 部下를 統率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民主的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民主型과 專制型을 절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sup>11)</sup> 警察

11) 金雲泰, 「行政學原論」(서울:博英社, 1980), 441面.

官들은 部下들이 上司를 不信하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의 지시와 출선수법의 결여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일상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적정한 업무의 지시와 상사의 출선수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경찰조직은 그 조직력을 최고도로 충분히 발휘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8. 部下들의 紀綱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철저한 근무감독을 통한 처벌적 방법보다는 生活의 安定을 위한 복지후생 대책을 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지휘관이나 감독자는 부하들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부하들의 사고원인이 되는 문제점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私生活과 관련된 사고야기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휘관이나 감독자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부하된 직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지 않으면 사고방지는 어렵다고 본다.

9. 警察組織의 上官은 부하들의 업무수행과 그들의 勞苦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조직사회에서 상관의 인정감은 부하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상관은 부하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부하들이 자신의 能力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人事管理가 필요하다고 본다.

10. 한국경찰은 사회적으로 좋은 評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찰관의 모집과정에서 우수한 인력이 응모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앞으로 점점 복잡해 지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력의 제고와 관련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11. 法秩序의 확립에 비중을 두다 보면 人權이 침해되기가 쉽고, 人權의 존중에 치우치다 보면 法秩序의 확립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法秩序와 人權에 대한 경찰관의 價値評價는 일반적으로 둘 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바람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 市民의 遵法情神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다수의 경찰관들이 시민의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民主市民으로서의 자세가 확립될 때 까지 경찰은 계속 국민을 제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3. 시민이 경찰관을 인식하기를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자라고 생각하리라는 경찰관의 태도는 경찰과 시민간의 우호관계 수립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찰관 자신의 이와같은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民主警察로의 體質改善을 위한 노력이 없는 한 진정한 국민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14. 경찰이 민중으로부터 不信을 받는 원인이 과잉단속과 불친절한 言動에 있다고 경찰관은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법집행을 행하는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경찰단속의 民主化와 언어 순화가 요청된다.

## 第Ⅳ章 結 論

### 第Ⅰ節 理論的 結論

매일 24시간 전국 어느 곳에서든 계속 수행되고 있는 警察業務는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국민의 身體·財產의 보호와 국가사회의 안전에 직결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경찰관은 적은 人力과 부족한 裝備를 가지고 국가에 忠誠하면서 국민에 奉仕하고 모든 社會惡과 犯罪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한한 인내와 높은 사명감, 그리고 뚜렷한 가치관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과 가정을 희생하면서도 조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經濟成長과 科學技術이 발달하여 국민의 생활양식이 바뀌고 價値觀이 변질된 오늘날, 警察官은 삶의 갈등과 직무의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고 본다. 전통적 道德觀念은 무너지고 물질만능의 사회풍조 속에서 治安需要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만큼 警察力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犯罪는 날로 흉폭화되어 가고, 향락적 퇴폐풍조는 국민 정서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靑少年들의 非理와 脫線은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학교나 가정의 전통적 犯罪抑制機能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

나아가 國際交流의 빈번과 國家元首의 頂上外交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安全을 도모하는 등 警察業務는 날로 폭주하고 있으며, 勞使間의 紛爭, 宗教問題, 學院事態등은 부족한 警察力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며 社會의 安寧을 유지하기 위하여 治安能力을 提高하기 위한 不단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劣惡한 근무환경과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警察官의 意識構造下에서는 경찰력의 제고를 위한 노력의 성과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경찰관도 다른 직업인과 동일하게 일정한 組織의 一員으로서 組織의 規則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公務員이며, 집에 돌아가면 자기 가족의 一員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社會人이다. 역사적으로 면면히 흘러내려 온 공직자로서의 끝없는 희생과 무조건적인 殫精竭慮은 이제 시대적 환경속에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國家에 忠誠하고 社會에 헌신하는 만큼의 이들에 대한 價値의 인정과 개개인의 경찰관들이 하나의 社會人으로서 자신의 발전과 가정의 안정을 이루도록 도모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그 임무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韓國警察官들의 실태를 보아도 현재의 경찰관들은 충분하지 못한 봉급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근무량이 과중하여 항상 피곤하며, 私生活을 즐길 만한 여유가 없고, 또한 결과적으로 경찰직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며, 승진등 자기발전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여 사기가 몹시 저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아울러 이들은 직장생활에 있어서 내부의 民主化를 요구하고 있으며 上司의 권위적인 지휘보다 勸善懲惡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아무리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경찰직에 몸담고 있는 한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의식을 증진시켜야 하고 法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을 지속적으로 계도하여야 하며, 犯罪를 예방하여 社會를 수호하여야 할 시대적 요청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찰관은 이왕의 맡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와 의식구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스스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서도 물질적·정신적 처우를

상응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은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 수행하는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행정부서와는 다른 차원에서 制度의 改善, 人力의 增員, 裝備의 補強, 豫算의 增額 기타 경찰관의 능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 第 2 節 政策建議

경찰관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1. 경찰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사회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화교육을 강화하고, 사명감과 윤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교육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2. 경찰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고 현행교육제도의 적정을 평가하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연구단을 편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하여 경찰교육을 정착시켜야 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3. 경찰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찰고유업무와 타부처 협조업무를 구분하여, 타부처 업무는 해당기관에 이관하고 경찰은 고유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구를 독립시켜야 한다.
4. 현직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하며, 인기가 떨어지는 경찰직에 우수한 인력을 끌어드릴 수 있는 유인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5. 在職時의 처우개선과 함께 퇴직후에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6. 가정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자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

무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지·파출소는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人力을 확보하여 當非番勤務를 정확히 실시해야 한다.

7.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部署外의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업무의 익숙과 이해를 통한 상호협조의 여건을 조성하고, 人事의 적정을 기하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人事制度의 방안을 확립하여야 한다.

8. 경찰업무의 성공적 수행은 시민의 적극적 협조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組織心理를 경찰내부에 극대화시키기 위한 교양을 강화하고, 국민의 對警察認識을 순화하고 民警協助體制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찰홍보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경찰공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9. 경찰관의 신규모집시에 전문지식 소지자의 선발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이 高學力化함에 따라 간부후보생의 학력을 대졸이상으로 제한하고 경찰대학생의 배출과 연계하여 간부후보생 과정을 대학원과정으로 발전적 조정이 요망된다.

10. 승진의 정체에서 오는 사기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階層制를 축소하고, 승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상위직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1.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를 위하여 치안본부 또는 경찰 대학에 상설 연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參 考 文 獻

1. 警察大學, 「警察學概論」, 仁川:警察大學, 1982.
2. 金雲泰, 「行政學 原論」, 서울:博英社, 1967.
3. 朴璉鎬, 「行政學 新論」, 서울:博英社, 1981.
4. 朴東緒, 「韓國行政論」, 서울:法文社, 1982.
5. 申宗淳, 「行政學 概論」, 서울:博英社, 1983.
6. 李文永, 「行政學」, 서울:一潮閣, 1980.
7. 崔鍾泰, 「現代人事管理論」, 서울:博英社, 1981.
8. 李桂燮, 「韓國警察官에 關한 行態學的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大 行政大  
學院, 1966.
9. 劉鍾海, 「行政學-政府機關의 政策形成-」(Ira sharkansky 著), 서울:博  
英社, 1975.
10.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82.
11. 國務總理 企劃調整室, 青少年 白書, 1981.
12. 內務部 治安本部, 警察統計年報, 1978~1982.
13. 總務處, 總務處年報, 1983.
14. Sullivan, John L.,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3r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7.
15. Wilson, O.W., Police Administration, 4th ed.,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1977.

## 韓國警察의 奉仕像定立에 관한 研究\*

黃 芝 淵\*\*

目	次
第1章 序 論	第1節 警察의 機構面
第1節 研究의 目的	第2節 警察의 運營管理面
第2節 研究의 範圍와 方法	第3節 警察의 法執行面
第2章 奉仕警察의 意義	第4節 警察官의 意識面
第1節 奉仕警察의 概念	第5節 國民의 對警察意識面
第2節 奉仕警察의 目的	第5章 奉仕像定立을 위한 方案
第3節 奉仕警察의 任務	第1節 警察機構의 改編
第4節 奉仕警察의 手段	第2節 警察運營管理의 改善
第5節 奉仕警察의 態度	第3節 警察法執行의 方向轉換
第3章 外國警察의 奉仕像	第4節 警察官意識構造의 革新
第1節 美國警察의 奉仕像	第5節 國民의 對警察意識의 發展
第2節 英國警察의 奉仕像	第6章 結 論
第3節 日本警察의 奉仕像	參 考 文 獻
第4章 奉仕像定立의 沮害要因	英 文 抄 錄

\* 本論文은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碩士學位論文(1984.8)을 要約한 것임.

\*\* 警察大學 教授係.